붙임 6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사항

□ 편의제공 대상

○ 한국전기안전공사 신규채용 전형 응시자 중,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

–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 시각 · 지체 · 뇌병변 ·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해당전형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
○ 기타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

□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결과 안내

○ 편의제공 신청서에 장애유형 · 정도, 편의제공 신청 사항 등을 작성 제출

– 입사지원서 제출 시,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칸에 체크

– 편의지원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의사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Q&A 게시판 등록

* 제출기한 : 지원서 접수 마감일시

–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편의제공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, 안내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○ 신청자 대상 승인 여부 별도 안내 (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등 개별 안내)

□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

○ '(참고)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증빙서류'를 통해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필요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

※ 상이등급자의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의사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
○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

◈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 및 정도	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(각1부)	비고
지체장애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별도 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
뇌병변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 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 ·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
시각장애	공통		· 확대/축소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음성지원컴퓨터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	- *	기존 1~2급
		·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3급 2호
		·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-	기존 3급 1,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7배) · 음성지원컴퓨터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
		·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- *	
		·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1.5배)	- *	기존 4,5급 1호
		·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	- *	기존 5급 2호
		·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	·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6급
청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2~6급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	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
	임신부		· 별도 책상 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	
	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		· 시험 중 화장실 사용 · 별도 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진단서 (원본)	

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회·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·확대문제지: A3 규격의 118%, A2 규격의 150%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·확대답안지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·축소문제지: A4 규격의 82%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

※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◈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□ 발급기관 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○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○ 의사진단서가 아닌 의사소견서,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

○ 다만, 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

□ 발급일자 :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(원본)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○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(※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)

○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
○ 신청 하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- 편의제공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-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신청할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
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장애유형	장애정도	예 시 ※①~③ 반드시 기재
시 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 하 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시각장애가 심하지 않은 자 –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 장애인		① 장애유형 및 정도 : 뇌병변장애가 심하지 않은 자 –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–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
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

'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사항'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채용홈페이지 내 Q&A게시판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인적사항

지원분야	성 명	연락처 (휴대전화)
경영관리직-본사 및 전북(예시)		

2. 편의제공 신청내용

신청구분	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 □ 임신부 □ 기타 일시적 장애 등 <상세기술>
첨부서류	□ 장애인증명서('26. 3. 17이후 발급분) □ 의사 진단서(응시접수 마감일 4년 이내 발급) / *해당자만 제출* ※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Q&A 게시판에 등록
장애유형(정도)	*지체장애(상,하지) /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(작성예시)*
편의제공 요청사항	*※ 작성예시* *○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* *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 *○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*
편의제공 필요성	*구체적으로 기재*

※ 신청서 기재 시 편의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※ 편의제공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한국전기안전공사 신규채용 필기시험 전형에서 위와 같이 편의제공 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

2026. . .

성명 (서명 또는 날인)